



제 433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
포함 등 〉

■ 김위상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3619호)

2026. 3.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 포함 등	2
※ 참고자료	7
1. 동물원 관리 제도 현황	7
2. 전국 동물원 운영 현황	8

I. 제안경위

2025년 10월 16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,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.

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,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.

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,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, 이동,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,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 포함 등

개정안은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,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해당 개체의 폐사, 이동,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매년 2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6조(실태조사 및 평가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	제6조(실태조사 및 평가 등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4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(이하 “멸종위기종”이라 한다) <u>개체 현황</u>

현행	개정안
4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제20조(운영·관리 기록 및 보존)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,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0조(운영·관리 기록 및 보존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보유동물 중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, 개체 수 및 반입, 반출, 증식, 폐사에 관한 기록</u>
4. (생략) 제21조(자료의 제출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자료,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<u>1회</u>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·③ (생략) 제25조(비용지원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제21조(자료의 제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1회(제20조제4호의 자료는 2회)</u>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5조(비용지원 등)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<u>멸종위기종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) 및 해양보호생물중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)의 보전·복원 및 관련 조사·연구</u> 2. ~ 4. (생략)	-----. 1. <u>멸종위기종</u>----- -----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‘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,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 등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,¹⁾

1)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실태조사 및 평가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
2.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
3.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
4.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‘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 동물 중 및 개체 수, 보유동물의 반입, 반출,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등’을 기록할 의무와 해당 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²⁾, 해당 자료를 매년 1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.³⁾

다만,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(이하 “멸종위기종”이라 한다)이 동물원 내에서 자연사가 아닌 질병, 사고사 등으로 폐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, 보유 동물 중 ‘멸종위기종’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⁴⁾

이에 개정안은 ①실태조사 항목에 명시적으로 ‘멸종위기종 개체 현황’을 포함하고, ②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가 기록·보존·제출하려는 자료에도 ‘멸종위기종 해당 생물의 종, 개체 수 및 반입, 반출, 증식, 폐사’를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만, 개정안에 대하여 ‘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’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관한 기록을 매년 2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업무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,

2) 「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운영·관리 기록 및 보존)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,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1.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중 및 개체 수
2. 보유동물의 반입, 반출,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
3.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
4.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3) 해당 자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제공되고 있음.

4) “국제적 멸종위기종 절반 넘게 질병·사고 등 폐사”,(임이자의원실 보도자료, 2024.10.)
(https://www.peoplepowerparty.kr/news/lawmaker_inspection_view/104134)

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동물원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연 1회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541

※ 참고자료

1. 동물원 관리 제도 현황

① 동물원·수족관 설립기준 강화

- (허가제 전환) 동물원·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, 허가권자는 전문 검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 검토
 - 서식환경·전문인력 등 허가요건* 충족 시 동물원·수족관 설립이 가능하며, 기존 동물원은 5년내 허가를 득하도록 유예

*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, 질병·안전관리계획, 휴·폐원시 동물관리계획 등

구분	기 준(등록기준)	개 정(허가기준)
서식환경 기준	< 신 설 >	• 주요 동물 사육기준 규정 * 세부기준은 허가업무지침에서 구체화
전문인력 기준	• 사육사 : 1~3명(40종 미만 1명, 40종~70종 2명, 70종 이상 3명) • 수의사 : 1명(촉탁수의사 허용)	• 사육사 : 2~6명(70종 미만 2명(위험동물 보유시 3명), 70종 이상 6명) • 수의사 : 1~2명(위험동물 보유시 2명)
질병·안전 등 관리 계획	• 자체 수립 후 이행	• 허가 시 계획의 적절성 평가

- (전문검사관제 도입) 동물원 허가·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*으로 지정·자문

* 수의사 취득후 동물원 5년이상 근무, 동물원에서 7년이상 종사, 관련 업무 10년이상 종사

② 동물원 현황조사 및 제재 강화

- (실태조사 및 시설검사) 기후부·해수부가 5년마다 시설 운영현황, 동물복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 및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개
 - 허가권자의 정기검사(매 5년) 및 수시검사(필요시) 실시 규정 마련
- (금지행위 강화)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,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, 만지기 먹이주기 등을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금지

2. 전국 동물원 운영 현황

□ 동물원 운영 현황(총 116개소, '25.8 기준)

- (운영주체) 공영동물원 25개소, 민영동물원 91개소
- (관리체계(허가권자)) 공영동물원: 유역·지방청, 민영동물원: 지자체
- (시설형태) 실내동물원 49개소(공영 4, 민간 45)
- (규모*) 대형동물원 15개소, 중형동물원 36개소, 소형동물원 65개소

* 동물원 규모 : 대(10,000m² 이상), 중(1,000~10,000m²), 소(1,000m² 미만)

< 지역별 동물원 현황 >

지자체명	합계	공영	민영	지자체명	합계	공영	민영
서울특별시	5	1	4	충청북도	4	1	3
부산광역시	6	1	5	충청남도	7	2	5
대구광역시	4	1	3	전라북도	4	3	1
인천광역시	6	1	5	전라남도	8	3	5
광주광역시	3	1	2	경상북도	8	2	6
대전광역시	3	1	2	경상남도	8	4	4
울산광역시	4	1	3	제주특별자치도	8	1	7
강원특별자치도	11	1	10	세종특별자치시	2	0	2
경기도	25	1	24	총계	116	25	91

□ 동물원 보유동물수 현황('24.12 동물원 연보 기준)

- 총 59,243개체 : 국제적멸종위기종 6,375개체, 국내멸종위기종 823개체, 천연기념물 1,055개체

※ 국제적 멸종위기종, 국내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로 중복 지정되어 관리되는 개체 존재

□ 동물원 허가제 도입 이후 허가 동물원 현황('25.8 기준)

- 공영 2개소(청주동물원, 국립생태원), 민영 4개소(에버랜드, 울산 와우쥬, 강릉 애니멀스토리, 제주 모모쥬) 등 6개소 허가완료

※ 등록→허가 동물원 : 청주동물원·국립생태원·에버랜드 / 신규 동물원 : 와우쥬·애니멀스토리·모모쥬

출처: 기후에너지환경부